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나2516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A구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2. 선고 2003가단329574 판결
변 론 종 결	2005. 3. 24.
판 결 선 고	2005.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구청장 C(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03. 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엘에이에서 같은 달 20. 개최되는 D에 참가한 후 엘에이 의회 및 캘리포니아 의회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라스베이거스의 모노레일을 시찰하는 것을 주요 공식일정으로 한 국외여행(이하 ‘이 사건 국외여행’이라 한다)을 다녀오면서, 위 D를 주관한 엘에이의 민간단체로부터 부부동반 초청을 받았던 관계로 자신의 부인인 E과 동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5.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에 따라 구청장 부인도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공무 목적으로 위 국외여행에 동반한다고 보고, 원고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A구공무원여비조례 제4조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예산으로 구청장 부인에게 구청장과 동일한 액수인 금 8,911,13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산집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자치부에 대한 인터넷 질의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2003. 8. 9. 원고의 홈페이지에 구청장 부인이 이 사건 국외여행에 동반한 목적이 행정자치부가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보상금 항목 중 민간인해외여비



항목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한 F연합회 행정감시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G언론, H언론, I언론 등 다수의 일간지는 같은 달 14.경 원고가 원고 예산으로 구청장 부인에게 이 사건 국외여행 경비로 금 891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는 행정자치부가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고 예산부족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담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구청장 부인의 이 사건 국외여행이 공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예산집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시민단체인 F연합회 행정감시국장이라는 직명을 사칭하여, 구청장 부인의 위 국외여행은 공무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청장 부인에게 불법으로 예산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고,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피고의 위 제보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언론사에 제보한 위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의 위 제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국외여비의 적법한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가사 위 제보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룬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예산집행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위 제3호중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편성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여비를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와는 별도로 일반보상금 항목 중 ‘민간인해외여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시의 여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공금을 지급할 수 없는 바(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주로 그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세금 등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를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와 별도로 민간인해외여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반면, 국가의 경우에는 공무원해외여비와 민간인해외여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국외여비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촉한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시의 여비에 한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예산과목에서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민간인에게 위촉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볼 수 없는 구청장 부인의 이 사건 국외여행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산집행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을 담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시민단체인 F연합회 행정감시국장이라는 직명을 사칭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F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F연합회의 창립회원 및 운영위원으로써 1999. 3.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는 위 연합회 중앙본부 행정감시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3.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는 위 연합회 서울지부의 행정감시국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직명을 사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바(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는 피고가 원고 소속 공무원들의 구청장 부인에 대한 이 사건 예산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자체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윤창 _____

 판사 강성훈 _____

 판사 박정우 _____